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42

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이개호·정진욱·이정문

이건대 • 부승찬 • 이언주

이훈기 • 박수현 • 서영교

조인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을 통해서 보듯이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였음.

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질 서 제약, 정신적인 충격, 특히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 적 피해와 국격 실추,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 그 피해를 짐작키 어려운 상황임.

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도 대통령이 다시 제2,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(제11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대통령은 | ① |
|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| |
|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 | |
| 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| |
|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 | |
| 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 | |
| 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| <u>이 경우 대통령은</u> |
| | 임기 중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|
| | <u>수 없다.</u>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